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

의안 번호	68

제 출 일 : 2026. 10. 21.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2027년 상반기부터 진접선 증회 운영을 위해 진접선 운영협약을 인력채용 등을 고려하여 2026년 하반기(11월)에 갱신하고자 함

2. 협약 개요

○ 협 약 명 :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협약

○ 협약기관 : 남양주시, 서울교통공사

○ 협약시기 : 2027. 3. 19. ~ 2030. 3. 18.(3년) ※ 당초 협약기간은 5년

3. 변경사항

○ 당초 협약에서 규정된 권리의무는 유지하되 여건변화에 따른 변경사항(인력증원, 경비 배분방식 변경, 시설사용료 적용범위 등) 포함하여 협약 갱신

○ 협약 변경사항 반영으로 운영비는 약 48억원 증가

[참고: 주요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1	운영인력(명)	118	160(증회 운영 15명 포함)	증 42명
2	경비 배분 방식	차량배속 비율/인력비율	거리비율 배분	하남선,별내선
3	운영수수료	3%	5%	타 연장노선도 협약갱신 시 동일하게 적용
4	시설사용료 적용범위	차량기지 시설	승무사무소, 관제 시설 등으로 확대 적용	
5	혼잡도 원인자 부담 원칙 명시	-	진접선 의한 본선 혼잡도 증가시 비용 청구	
6	추가열차운행	-	20회	선시행 8회 (2026. 11.1.)

4. 향후계획

○ 2026. 11. : 협약체결 및 2027년 본예산 편성

소관 과		교통정책과
입안자 (제출자)	과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김 학 진
	팀장 직위・성명	철도운영팀장 오 재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영 순 (031-590-0970)

□ 붙임 협약서(안)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협약서

남양주시,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확정안건 의결(이하 “확정안건 의결”),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이하 “건설협약서”) 제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진접선 복선전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협약” 또는 “본 협약”은 본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을 말합니다.
2. “본 사업”은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을 말합니다.
3. “본 사업시설”은 본 사업과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하며, 협약 체결일 이후 협약당사자들의 합의로 추가 또는 변경된 시설을 포함합니다.
4. “위탁기관”이란 “남양주시”를 말합니다.
5. “수탁기관”이란 “서울교통공사”를 말합니다.
6. “협약기관”이란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을 말합니다.
7. “기존구간” 또는 “본선”은 수탁기관이 기 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

1~8호선을 말합니다.

8. “연장노선” 이란 “본 협약” 에 해당하는 “진접선” 을 말합니다.

9. “유지관리” 란 완공된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운영경비” 란 본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기타비용, 저장품, 수탁재산 취득 및 부대비용, 시설 및 장비사용료, 본선선로유지비 등 모든 비용과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1. “시설사용료” 란 수탁기관이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기반시설(건물, 토지 등)과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며 차량, 관제, 승무분야에 대해 산정합니다.

12. “본선선로유지비” 란 수탁기관이 기존 운행하는 구간의 유지보수 비용을 말하며, 선로유지보수비, 전차선유지보수비, 전력료 등이 있습니다.

13. “사업비” 란 운영경비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4. “수탁재산” 은 “본 사업” 과 관련되어 위탁기관 부담으로 취득한 시설, 지식재산권, 특허권, 구분지상권 등의 재산 및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15. “수탁저장품” 은 “본 사업” 과 관련되어 전동차 안전운행 및 시설물 유지, 보수작업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조달 후 저장 중에 있는 신품 또는 중고품을 말합니다.

16. “사업연도” 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말합니다. 단,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영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 이며 사업종료 연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수탁기관에 의한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실제로 종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17. “정산”이란 본 사업의 연간결산 후 사업비 잔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을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게 반환하고, 운영결손금 발생 시 해당 금액을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정산보고서”란 사업비 등을 검증 및 확정하기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합의된 업무 수행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작성하고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결산 및 정산결과를 말합니다.

19.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협약기관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사업개요) 본 협약의 규모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 업 명 :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2. 사업구간 : 불암산역~경기 남양주시 진접읍(3역, 14.892km)
3. 사업범위 : 관제, 승무, 전동차량(전동차 5편성 50칸), 기술[정보통신 일부, 운전취급(신호)]

제4조(위・수탁기간) ① 본 사업의 위・수탁 기간은 2027년 3월 19일부터 3년으로 합니다.

② 협약기관은 제1항의 위・수탁기간 만료 1년 전까지 협약 상대방에게 협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기관 간 협의하여 협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5조(열차 운행 간격) ① 본 사업의 열차 운행 간격은 평일기준 혼잡 시간대(07시~09시/18시~20시) 최소 10분, 비혼잡시간대 최소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의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열차운행 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제9조 제5항에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열차 운행 간격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동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열차 운행 간격이 조정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전동차량을 투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위탁기관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탁기관이 동의하면 전동차량의 일부를 투입할 수 있되, 제1항의 열차 운행 간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6조(추가 열차 운행) ① 수탁기관은 진접차량기지 입출고 열차 중 일부를 진접선 구간 추가 승객 취급에 협조하고 추가 열차 운행 횟수는 일 20회를 넘지 않습니다. 다만, 증회 중 일부는 오남행/발이 있을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열차운행 총 횟수 중 오이도행/발이 일부 가능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추가열차운행 시 발생하는 운영경비 일체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며, 위·수탁기관의 협의에 따라 협약 개시일 전이라도 추가열차운행 20회 중 오남행/발 8회를 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승무원(8명)을 투입하여 운행하며, 영업운행 8회 선 시행 운행일부터 총 추가열차운행 20회에 해당하는 증원인력의 배치일까지의 운영경비는 위탁기관의 부담으로 사업비에 반영하여 정산합니다.(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직렬별 평균

인건비 적용)

③ 진접선 추가열차운행 총 20회 중 선시행 8회를 제외한 추가 12회는 갱신협약 증원인력 채용 후 해당 증원인력이 4호선 구간인증을 취득하고 개시되며, 증원인력의 배치 시점부터 운영경비를 정산합니다.

④ 수탁기관의 경영정책, 전동차량 운영계획 조정, 근로 조건, 노사 합의사항 등의 변화로 추가열차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수탁 기관 간 협의하며, 수탁기관의 판단으로 추가열차운행 계획을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⑤ 추가열차운행 시 기존 구간의 시격과 혼잡도에 영향을 미치면 열차운행계획이 조정 또는 종료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열차운행이 필요할 경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전동차량 임차(유휴 전동차량 보유 시 한함) 또는 진접선 전동차량 추가 구매를 추진합니다.

⑥ 추가열차운행 시 위탁기관은 진접선 구간에서 발생한 수탁기관의 영업열차 및 회송열차의 선로사용료 청구분과 전력료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7조(운영인력) ① 본 사업 운영인력 총원은 145명으로 합니다. 추가열차운행 인원 15명은 별도이며 (이 인원 포함 시 총 160명), 추가열차운행 인원 15명 중 선시행(8회)으로 인한 투입인력은 8명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영인력계획은 제11조(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의 운영계획에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판단으로 운영인력 총원의 범위에서 운영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④ 기존구간의 근로조건, 근무환경 등 근무제도 변화, 열차 운행 횟수

증가 등 본 사업의 운영인력 총원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 협약기관 간 합의에 따라 운영인력 총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인력 총원의 변경 시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직렬별 평균인건비**)을 적용하여 변경 시점부터 반영합니다.

⑤ 협약기관은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운영조직 등 위탁운영의 구체적인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운영인력의 현업사무소는 법령 등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시 승객대피 및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조성하고, 근무환경을 위해 지상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시설 설치 및 개선에 협약기관은 적극 협조합니다.

제8조(수탁기관의 업무범위) ①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본사업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진접선 복선전철 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운송
2. 진접선 복선전철 차량의 유지보수 및 열차의 운행관리
3. 진접선 복선전철 철도시설의 관리(관제, 운전취급, 정보통신 일부)
4. 제1호 내지 제3호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탁기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며,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약기관 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위탁기관의 의무 및 권한) ① 위탁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② 위탁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제16조(사업비 지급), 제17조(사업비 결산

및 정산)의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기존구간과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탁재산을 취득 및 인도하고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 시설에 대한 소규모 개량 및 교체, 대체투자 할 권한을 가집니다. 단, 대규모 개량 및 교체, 대체투자는 위탁기관이 진접선 철도시설 소유자와 협의하여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④ 본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설비 및 시설물, 기존구간 혼잡도 증가, 협약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하는 전동차량 등의 비용과 설비 및 시설물 등의 점검, 개량비용 등의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합니다.

⑤ 위·수탁기간 동안 본 사업으로 인해 기존구간의 혼잡도 변화(수탁기관 조사자료 활용 또는 위탁기관이 별도 조사 시 조사비용 위탁기관 부담)가 협약 개시 시점 대비 3개월 이상 혼잡도 증가가 지속되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3개월 이상 지속 후 완화된 경우 포함) 수탁기관은 기존구간 혼잡도 완화를 위한 증차 대책(추가 전동차량 구입, 타 노선 전동차량 개조 등) 및 운영 개선 대책(시격 단축을 위한 열차운행 횟수 조정, 임시 또는 비상열차 투입 등)을 수립하여 위탁기관에 제시 후, 지체없이 실시하며 위탁기관은 비용을 부담합니다.(수탁기관의 선조치 비용 포함)

⑥ 제5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탁기관이 위의 증차 대책 및 운영 개선 대책 등 기존구간 혼잡도 완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선 조치한 경우(혼잡도 문제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 포함), 해당 비용을 제14조 제1항 제1호~제5호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⑦ 위탁기관은 본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수탁기관에 다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제11조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2. 제17조에 따른 정산(결산)보고서
3. 기타 본 사업운영에 관련된 사항

⑧ 위탁기관은 지도·점검 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⑨ 위탁기관은 수탁기관과의 협약기간 만료시 수탁기관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및 권한) ① 수탁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② 수탁기관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기존구간과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단, 위탁기관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수탁기관은 본 사업 운영기간 동안 본 사업 구간의 재산과 시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시설 등을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협약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본 사업시설 내에서 시행하는 점검·용역·공사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요청에 대하여 제8조(수탁기관의 업무범위) 및 제13조(유지관리)의 업무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를 하며 감독자 및 작업자 등의 출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 수탁기관은 제9조(위탁기관의 의무 및 권한) 제8항에 따라 위탁기관이 요구한 조치가 부당하거나 그밖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① 수탁기관은 매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합니다)을 관련법령 및 수탁기관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 운영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개시 년도의 운영계획은 제4조에 따른 위・수탁 운영기간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④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은 법령 등에 따라 기존구간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보험 및 기타 본 사업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합니다.

제13조(유지관리)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기관은 본 사업시설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관련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③ 위탁기관은 본 사업시설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철도운영자로서의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합니다.

④ 위탁기관은 본 사업시설의 시설물 등의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리를 수탁기관에 위탁합니다.

제14조(운영경비) ① 본 사업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인건비
 가. 본 협약 제7조(운영인력) 제1항에 따른 운영인력 인원수에 수탁기관의 직렬별 평균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근무 형태는 교대(교번 포함) 또는 통상으로만 적용합니다.
 나. 수탁기관의 급여 관련 제규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등을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을 포함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본 사업에 근무한 기간만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라. 기타 협약기관 간 합의하여 추가되는 인원(가목의 운영인력 인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는 실제 지급액 또는 직렬별 평균인건비(교대, 교번, 통상)를 적용합니다.
2. 경비 : 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수탁기관 회계 관련 규정에 명시되는 비용으로 실비로 반영합니다.

3. 기타비용 : 수탁기관 소유의 모터카 등 특수장비 사용료, 본 사업구간 운영인력 이외의 인력 및 수탁기관 자산을 활용하여 법령과 위탁기관 요구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 발생하는 비용 등은 실비(부대비 포함)로 반영합니다.
4. 수탁저장품 등 : 저장품 등 재고자산은 구매시 전액 비용(저장품, 소모품비, 재료비 등) 처리하고 미사용 재고는 수탁기관에서 별도 관리하되 다음 사업연도 이후 사용에 충당하며, 제15조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합니다.
5. 수탁재산 취득 및 부대비용 : 본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탁재산 취득비용 및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반영합니다.
6. 일반관리비 : 본 사업의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경비, 기타비용, 저장품 등, 수탁재산 취득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의 5%를 적용합니다.
7. 위탁수수료 :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의 5%를 적용합니다.
8. 시설사용료 및 본선선로유지비
 가. 본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부대비 포함) 및 본선선로유지비를 반영합니다(부가가치세 별도).
 나. 시설사용료는 수탁기관의 제규정을 따르고 이 외의 사항은 협약기관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시설사용료의 재산정은 갱신협약 체결 연도 내 완료하며 위·수탁기간 개시 시점부터 소급하여 사업비에 반영합니다.(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 산정 시 제외)

다. 본선선로유지비는 수탁기관의 기존구간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실비를 말하고, 협약 개시 연도 내 위·수탁기관의 협의에 의해 별도의 기관을 선정 후 용역을 완료하여 산정기준을 정하며, 용역결과에 따라 협약 개시 시점부터 소급하여 사업비에 반영합니다.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 산정 시 제외)

라. 시설사용료 재산정과 본선 선로유지비 용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하며, 협약 개시 연도인 2027년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와 본선선로유지비로 인한 사업비 결손금은 2028년 사업비에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반영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계정과목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릅니다.

제15조(운영경비 집행 및 배분기준 등) ① 본 사업구간의 운영경비는 기존구간의 집행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합니다.

② 수탁기관은 본 사업 운영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규정 및 업무 처리 지침 등을 적용합니다.

③ 운영경비(인건비, 운영인력 인원수에 비례하는 경비 등 제외)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1. 관제, 차량, 승무분야 : 행정구역 거리비율(진접선 경기구간 12.817km)

가. 수탁기관 운영 4호선(남태령~진접역) : 45.4km

나. 진접선 총 구간 : 14.892km

다. 진접선 서울구간 : 2.075km

2. 기술분야(운전취급, 정보통신 일부)

가. 진접선 단독비용 : 진접선 실비

나. 그 외 : 인원비율

④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당해 사업연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일정이 9월 30일 이후인 경우, 수탁기관의 행정 일정에 따릅니다.

⑤ 위·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이 기존구간과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4조 제1항의 운영경비 예산이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6조(사업비 지급) 수탁기관은 매 분기 개시 20일 전까지 다음 분기 사업비를 청구하고, 위탁기관은 매 분기 개시 후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수탁기관이 합의하여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사업비 결산 및 정산)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자체적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결산서 작성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결산서를 위탁기관에게 제출합니다.

② 협약기관의 합의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기준에 따라 그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결산 및 정산을 검증·확정 후 15일 이내에 정산(결산)보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결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협약기관 간 정산을 완료합니다.

④ 제2항의 회계법인 선정 및 정산보고서 작성 기준 등 정산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절차는 협약기관의 합의로 정합니다.

제18조(이자지급) ① 협약기관이 제16조(사업비 지급) 및 제17조(사업비 결산 및 정산)에 정한 지급기한까지 사업비를 지급 또는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미지급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지급 또는 반환의 지연 사유가 지급 또는 반환을 받아야 하는 협약 상대방에 있는 경우
3. 협약기관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협약기관의 조직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체되는 경우
5. 협약개시연도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신규적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손금 발생의 경우(2027년 한정)

제19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재산은 수탁기관의 제 규정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운영하고, 협약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재산 재물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합니다.

③ 수탁재산의 개·보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합니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 및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의 현황 및 집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관하여 위탁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안전상 등의 사유로 수탁재산 변경 등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서 선 조치 후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제 규정에 따라 발생한 불용대상 수탁재산에 대하여 불용결정 후 폐기 또는 위탁기관에 반환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합니다.

⑥ 제5항의 폐기 또는 반환 여부는 위탁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위탁기관이 반환받는 것을 거부한 수탁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처분 시 발생되는 수익은 수탁기관에 귀속됩니다.

제20조(수탁저장품의 관리) ① 수탁저장품의 소유권 귀속은 해당 저장품이 사용되는 재산의 소유관계에 따르며, 수탁기관의 제 규정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운영하고, 협약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수탁저장품의 불용품 결정기준 및 절차는 수탁기관의 규정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저장품을 불용결정 후 폐기 또는 위탁기관에 반환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합니다.

④ 제3항의 폐기 또는 반환 여부는 위탁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위탁기관이 반환받는 것을 거부한 수탁저장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처분 시 발생되는 수익은 수탁기관에 귀속됩니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관은 본 협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해당 시점의 수탁재산 대장을 기준으로 수탁재산을

위・수탁 개시당시의 상태로(일반적인 마모 및 감가상각, 그밖에 수탁기관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은 손상・멸실은 제외)하여 위탁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재산의 인수인계는 수탁기관과 위탁기관(또는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자)이 공동으로 본 사업에 관한 점검 및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수인계하는 수탁재산은 시설, 비품,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예비부품 재고와 관리 중인 본 사업 관련한 문서, 기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④ 수탁기관은 본 협약 종료 시 차기 수탁기관이 본 사업시설을 인도・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제3장 위험배분 및 분쟁해결 등

제22조(위험배분원칙)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해 및 위험 중 귀책사유가 협약기관에게 있을 경우 당해 손해 및 위험을 발생시킨 당사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위험(책임)배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기관 간 합의를 통해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제23조(수탁기관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본 조에서 “수탁기관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1.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구간의 운영을 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중단할 경우

2. 수탁기관이 해산 및 청산할 경우(단, 수탁기관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등

3.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본 협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수탁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기타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수탁기관이 부담합니다.

제24조(위탁기관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본 조에서 "위탁기관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1.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2. 위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협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위탁기관 귀책사유로 사업비의 증가 및 기타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합니다.

제25조(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시설복구 등의 비용 부담) 위·수탁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시설물(기존구간과 위탁구간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시설물 등 포함)의 피해복구 비용,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해당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 및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당해 부분을 위탁하는 위탁기관이 부담합니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이견 또는 분쟁 등이 발생 시 신의성실에 입각한 상호 협의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6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합니다.

제27조(분쟁금액의 지급방법) ① 협약기관 중 어느 일방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된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협약기관은 일부 이의가 있는 금액을 보류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선 지급합니다. 단,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금액은 분쟁대상 총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분쟁의 해결 시까지 보류된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에 대하여 제18조(이자지급)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장 기타사항 및 협약의 변경 등

제28조(기타사항)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기관은 상호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 협조합니다.

② 본 협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경우 본 협약과 관련해서 고용된 근로자는 본인 희망 시 다음 수탁기관에 고용승계가 되도록 협약기관은 노력합니다.

③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르고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9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탁기관은 본 협약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관 간 합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권리를 양도 및 이전하거나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30조(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내용은 협약기관 간의 서면 합의로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② 본 협약 체결 후 협약기관 간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별도의 변경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와 배치되는 내용에 한하여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협약기관 간에 서면 합의할 경우
2. 본 협약 제16조(사업비 지급)의 금액 또는 제17조(사업비 결산 및 정산)의 정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90일 초과 후 지급한 경우를 포함)
3. 수탁기관의 해산 및 청산 등으로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수탁기관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4. 천재지변, 전쟁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5. 그 외 상대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조(협약해지 등에 따른 보상) ① 위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 등이 된 경우 위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구체적인 비용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 등이 된 경우 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위탁기관의 손해액을 위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구체적인 손실금액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위탁자의 지위 이전) ① 위탁기관은 위·수탁 기간 중 수탁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수탁재산 소유권 및 위탁기관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위를 이전·변경할 경우 그 이전·변경된 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4조(비밀유지 의무) 협약기관은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밀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5조(협약이행 및 효력발생)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관은 협약을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협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남 양 주 시	서 울 교 통 공 사
시장 최 현 덕 (인)	사장 김 태 균 (인)